

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용두1구역 4지구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0-23호(2000.02.09.)로 정비구역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129호(2007.05.17.)로 용두1구역 변경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345호(2009.09.10.)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336호(2010.09.3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40호(2012.02.2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176호(2013.06.0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116호(2016.06.1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56호(2017.02.2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56호(2017.07.1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308호(2018.09.2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110호(2019.03.2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427호(2020.10.2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463호(2020.11.19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264호(2021.06.1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419호(2021.07.29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589호(2021.10.2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30호(2022.01.1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273호(2022.06.2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321호(2022.07.2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345호(2022.08.1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14호(2023.01.1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4호(2023.02.09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77호(2023.03.09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600호(2023.12.2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190호(2024.04.1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500호(2024.10.2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629호(2024.12.19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221호(2025.04.2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281호(2025.05.2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323호(2025.06.19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354호(2025.07.0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458호(2025.08.2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483호(2025.08.28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제5항,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,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6년 4월 2일
서울특별시장

1.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: 변경

지구명	유형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청량리재정비 촉진지구	중심지형 (20만㎡이상)	동대문구 용두·전농동 일원	358,066.7	감) 6.4	358,060.3	최초결정일 : 서고 제2009-345호 (2009. 09. 10.)

※ 변경사유 : 용두1재정비촉진구역 4지구 지적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

2.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: 변경없음

가. 기준년도 : 2021년

나. 목표연도 : 2030년

3.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: 변경없음

가.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부도심 기능 회복 도모

나. 청량리 재정비촉진구역 계획 변경을 통하여 낙후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을 통하여 균형발전 도모(청량리 부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고 서울 동북권의 관문역할 수행)하며,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보다 나은 도시생활을 영위하기 위함

4.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지역 결정(변경)에 관한 사항 : 변경

구 분	사업방식	구역명	면적(m ²)			비 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합계			358,066.7	감) 6.4	358,060.3	
촉진 구역	소계		148,049.2	감) 6.4	148,042.8	
	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	청량리1재정비촉진구역	1,819.2	-	1,819.2	
		청량리2재정비촉진구역	1,938.3	-	1,938.3	
		청량리3재정비촉진구역	7,020.6	-	7,020.6	
		청량리4재정비촉진구역	41,573.9	-	41,573.9	
		용두1재정비촉진구역	51,644.8	감) 6.4	51,638.4	
		전농재정비촉진구역	27,815.4	-	27,815.4	
		전농12재정비촉진구역	16,237.0	-	16,237.0	
존치 지역	소계		210,017.5	-	210,017.5	
	존치지역		210,017.5	-	210,017.5	

※ 변경사유 : 용두1재정비촉진구역 4지구 지적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

5. 촉진구역별 정비계획 결정(변경) : 용두1재정비촉진구역 외 다른 구역 변경 없음

6. 용두1재정비촉진구역 결정(변경)에 관한 사항 : 변경

가. 용두1 재정비촉진구역

1) 재정비촉진구역 결정조서 : 변경

구 분	정비사업 명칭	위 치	면적(m ²)			비 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변경	용두1재정비촉진구역	용두동26일대	51,644.8	감) 6.4	51,638.4	-

※ 변경사유 : 용두1재정비촉진구역 4지구 지적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

2) 토지이용계획 : 변경

구분		명칭	면적(m ²)	비율(%)	비고	
기정	용두 1구역	합계	51,644.8	100.0		
		소계	34,810.0	67.4		
		1	2,019.6	3.9	[업무,판매]	
		2	2,566.8	5.0	[업무,주거]	
		3	3,045.9	5.9	[업무,주거]	
		4	1,360.5	2.6	[판매,주거]	
		5	준주거	12,183.4	23.6	[판매,주거]
			일반상업			[업무,판매]
		6	준주거	13,633.8	26.4	[업무,주거]
			일반상업			
		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	소계	16,834.8	32.6	-
			도로	15,266.0	29.6	도시계획시설
			공원	1,568.8	3.0	-
변경	용두 1구역	합계	51,638.4	100.0		
		소계	34,810.3	67.4		
		1	2,019.6	3.9	[업무,판매]	
		2	2,566.8	5.0	[업무,주거]	
		3	3,045.9	5.9	[업무,주거]	
		4	1,360.8	2.6	[판매,주거]	
		5	준주거	12,183.4	23.6	[판매,주거]
			일반상업			[업무,판매]
		6	준주거	13,633.8	26.4	[업무,주거]
			일반상업			
		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	소계	16,828.1	32.6	-
			도로	15,259.3	29.6	도시계획시설
			공원	1,568.8	3.0	-

※ 변경사유 : 용두1재정비촉진구역 4지구 지적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

3)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: 변경없음

(1) 도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기정	대로	1	51	35~42 (42)	주간선 도로	3,300 (280)	종로6가 89	청량리동 749	일반 도로	-	서고 제2020-427호 (2020.10.22)	-
기정	대로	2	58	33~35 (33)	주간선 도로	1,850 (150)	용두동 (대2-14)	행당동 (118광장)	일반 도로	-	서고 제2020-427호 (2020.10.22)	-
기정	중로	2	1	15	집산 도로	117	용두동 24-2	용두동 20-36	일반 도로	-	서고 제2020-427호 (2020.10.22)	-
기정	중로	2	500	15	집산 도로	343	용두동 47-7	용두동 12-5	일반 도로	-	서고 제2020-427호 (2020.10.22)	-
기정	중로	2	501	15	집산 도로	85	용두동 26-27	용두동 20-80	일반 도로	-	서고 제2020-427호 (2020.10.22)	-
기정	중로	2	502	15	집산 도로	152	용두동 23-1	용두동 20-3	일반 도로	-	서고제2020-427호 (2020.10.22)	-
기정	중로	2	503	15 (13)	집산 도로	150	용두동 14-20	용두동 12-5	일반 도로	-	서고 제2020-427호 (2020.10.22)	-
기정	중로	3	4	12	국지 도로	78	용두동 26-14	용두동 26-17	일반 도로	-	서고 제2020-427호 (2020.10.22)	-

※ 1. ()는 용두1구역 연장 및 폭원임

(2) 입체적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구분	도면번호	시설명	위치	구분	규모		비고	
기정	1	도로	■기점부 : 용두동 23-12 ■종점부 : 용두동 23-47	길이(m)	60		5구역	
				폭(m)	15			
				높이	지하2m~지상15m이하	도시계획시설(도로)		
					지상2m초과, 지상15m초과	비도시계획시설		
기정	2	도로	■기점부 : 용두동 14-10 ■종점부 : 용두동 14-21	길이(m)	94		6구역	
				폭(m)	15			
				높이	지하2m~지상15m이하(건축물간 연결을 위한 시설물(연결브릿지) 부분 6m)	도시계획시설(도로)		
					지하2m초과, 지상15m초과	비도시계획시설		

(3) 공원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구분	도면번호	공원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2	공원	소공원	동대문구 용두동 26-1 일원	1,568.8	-	1,568.8	서고 제2020-427호 (2020.10.22)	

4) 건축시설계획 : 변경(면적변경)

구분	구역구분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치	주용도	건폐율	용적률	높이 최고 층수	비고 (주거비율 제한)
	명칭	면적(㎡)	명칭	면적(㎡)						
기정	용두1 재정비 촉진구역	51,644.8	1	2,019.6	용두동 24-1일대	업무,판매	50%이하	899%이하	90m이하	0%
			2	2,566.8	용두동 23-8일대	업무,주거	50%이하	899%이하	155m이하	90%이하
			3	3,045.9	용두동 26-14일대	업무,판매	50%이하	899%이하	90m이하	90%이하
			4	1,360.5	용두동 26-3일대	판매,주거	50%이하	549%이하	60m이하	89.4%이하
			5	12,183.4	용두동 23-1일대	판매,주거	50%이하	549%이하	60m이하	54.0%이하
						업무,판매		899%이하	90m이하	
6	13,633.8	용두동 14-1일대	업무,주거	50%이하	1,100%이하	200m이하	90%이하			
변경	용두1 재정비 촉진구역	51,638.4	1	2,019.6	용두동 24-1일대	업무,판매	50%이하	899%이하	90m이하	0%
			2	2,566.8	용두동 23-8일대	업무,주거	50%이하	899%이하	155m이하	90%이하
			3	3,045.9	용두동 26-14일대	업무,판매	50%이하	899%이하	90m이하	90%이하
			4	1,360.8	용두동 26-3일대	판매,주거	50%이하	549%이하	60m이하	89.4%이하
			5	12,183.4	용두동 23-1일대	판매,주거	50%이하	549%이하	60m이하	54.0%이하
						업무,판매		899%이하	90m이하	
6	13,633.8	용두동 14-1일대	업무,주거	50%이하	1,100%이하	200m이하	90%이하			

※ 변경사유 : 용두1재정비촉진구역 4지구 지적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

구역구분	적용지역		계획내용	비고	
	구역구분	적용지역			
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	용두 1구역	건축한계선	6지구	5m	-
			6지구외	3m	
		고산자로변		3m	
	벽면한계선	1,2지구	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각4m 이격 (지상1층부에만 적용)		-
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	용두 1구역	공공보행통로	1,2 지구내 벽면한계선으로 지정된 공지	폭8m	※ 공공보행 통로조성 지침 참조
			5,6 지구내 건축한계선으로 지정된 공지	폭12m	
			6 지구내 건축한계선으로 지정된 공지	폭10m	
	쌈지형 공지	2지구	1개소(개소별 49㎡이상)		-
		5지구내	2개소(개소별 45㎡이상)		-
		6지구내	2개소(개소별 60㎡이상)		-

주1) 준주거지역은 주거비율을 건축연면적의 90%이하로 제한

주2) 업무·판매시설 유도지역은 주거용도 입지 불허 및 공공보행통로에 면한 저층부(지상1층) 주거용도 입지 불허

→ 6지구의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(2022.1.26.)에 따라 상업지역 중 광역·지역중심 이하에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주거90%(주거·오피스텔등80+임대주택10) + 비주거 10% 적용

주3) 용두1구역내 4획지 공개공지 183㎡이상 확보(서울시 건축조례 제26조 제3항 적용)

주4) 용두1구역내 5획지(준주거지역) 공개공지 1,502㎡이상 확보(서울시 건축조례 제26조 제3항 적용)

※ 주용도라 함은 당해 건축시설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용도이며 제시된 용도 중 선택하여야 함

※ 공공보행통로 조성지침

- ① 대지 내 통로는 단차가 없이 연속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, 보도 혹은 도로와 접하거나 인접대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단차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. 또한 담장, 계단, 화단 등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치물을 설치 할 수 없다.
- ②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대지는 지정된 위치에 규정된 폭원 이상으로 24시간 일반인이 통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한다.
- ③ 공공보행통로는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바닥재료 및 포장을 하여야 하며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고, 야간통행에 안전을 도모 할 수 있도록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④ 대지 내 통로로 연결되는 양측도로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 경사로로 처리하여야 한다.
- ⑤ 동·서간 도로·통로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직선 형태로 조성하고, 건물간 지상연결 브릿지는 지상 6m이상 높이에 설치하되 지구 별 3개소 이하(폭4m 이하)로 설치 가능.

5)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부담률 : 변경

(1) 정비사업시행계획 : 변경

시행방법	시행예정시기	사업시행예정자	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	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	비고
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	구역지정 후 3년내	토지등소유자	256	해당없음	

(2) 공공용지 부담률 : 변경

■ 공공시설 부담률(토지) : 변경

구분	정비 구역명	위치	시행면적 (㎡)	사업계획내역(㎡)				비고		
				지구면적	공공시설면적			획지내 기존 공공용지 (㎡)	공공용지 부담율	
					계	공공시설 부담면적	계획공공용지내 기존공공용지			
기정	용두 1 구역	1	용두동 24-1일대	3,212.1	2,019.6	1,192.5	805.1	387.4	357.5	18.14
		2	용두동 23-8일대	3,660.4	2,566.8	1,093.6	645.5	448.1	101.4	17.49
		3	용두동 26-18일대	4,274.7	3,045.9	1,256.5	673.5	583.0	0.0	18.14
		4	용두동 26-3일대	1,923.0	1,360.5	562.5	301.5	261.0	0.0	
		5	용두동 23-1일대	17,794.2	12,183.4	5,610.8	3,273.7	2,337.1	573.8	
		6	용두동 14-1일대	20,780.4	13,633.8	7,146.6	4,531.3	2,615.3	1,510.0	
		합계		51,644.8	34,810.0	16,862.5	10,230.6	6,631.9	2,542.7	18.09
변경	용두 1 구역	1	용두동 24-1일대	3,212.1	2,019.6	1,192.5	805.1	387.4	357.5	18.14
		2	용두동 23-8일대	3,660.4	2,566.8	1,093.6	645.5	448.1	101.4	17.49
		3	용두동 26-18일대	4,274.7	3,045.9	1,256.5	673.5	583.0	0.0	18.14
		4	용두동 26-3일대	1,916.6	1,360.8	555.8	305.4	250.4	0.0	18.33
		5	용두동 23-1일대	17,794.2	12,183.4	5,610.8	3,273.7	2,337.1	573.8	18.14
		6	용두동 14-1일대	20,780.4	13,633.8	7,146.6	4,531.3	2,615.3	1,510.0	18.14
		합계		51,638.4	34,810.3	16,855.8	10,234.5	6,621.3	2,542.7	18.09

※ 변경사유 : 용두1재정비촉진구역 4지구 지적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

나. 용두1(4지구) 재정비촉진구역 : 변경

1) 재정비촉진구역 결정조서 : 변경(선형변경 없음)

구 분	정비사업 명칭	위 치	면적(㎡)			비 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변경	용두1(4지구) 재정비촉진구역	동대문구 용두동 26-3번지 일대	1,923.0	감) 6.4	1,916.6	지적측량성과에 따른 면적변경

2) 용도지역 결정(변경)에 관한 계획 : 변경(선형변경 없음)

구 분	면적(㎡)			비율(%)	비 고
	기정	변경	변경후		
계	1,923.0	감) 6.4	1,916.6	100.0	지적측량성과에 따른 면적변경
주거지역	1,804.2	감) 3.2	1,801.0	94.0	
상업지역	118.8	감) 3.2	115.6	6.0	

※ 변경사유 : 용두1재정비촉진구역 4지구 지적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

3) 토지이용계획 : 변경(선형변경 없음)

구 분	명칭	면적(㎡)			비 율 (%)	비 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계		1,923.0	감) 6.4	1,916.6	100.0	-
정비기반 시설 등	소계	562.5	감) 6.7	555.8	29.0	-
	도로	562.5	감) 6.7	555.8	29.0	-
획 지	소계	1,360.5	증) 0.3	1,360.8	71.0	-
	획지 (4지구)	1,360.5	증) 0.3	1,360.8	71.0	주용도 - 준주거 : 판매·주거

※ 변경사유 : 용두1재정비촉진구역 4지구 지적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

4)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: 변경없음

(1) 도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기정	중로	2	500	15	집산 도로	343	용두동 47-7	용두동 12-5	일반 도로	-	서고 제2020-427호 (2020.10.22)	-
기정	중로	2	501	15	집산 도로	85	용두동 26-27	용두동 20-80	일반 도로	-	서고 제2020-427호 (2020.10.22)	-
기정	중로	3	4	12	국지 도로	78	용두동 26-14	용두동 26-17	일반 도로	-	서고 제2020-427호 (2020.10.22)	-

5) 건축시설계획 : 변경

구분	구역구분		위 치	용도지역	주용도	건폐율 (%)	용적률 (%)	높이 (m)	층수 (지상/지하)	비고 (주거비율 제한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명칭	면적(m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정	용두1(4지구)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	1,923.0	용두동 26-3일대	준주거 지역	판매, 주거	50% 이하	549% 이하	60m 이하	지상18층 이하 지하5층	89.4%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변경	용두1(4지구)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	1,916.6	용두동 26-3일대	준주거 지역	판매, 주거	50% 이하	549% 이하	60m 이하	지상18층 이하 지하5층	89.4%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		<p>■ 공동주택 - 58세대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 분</th> <th colspan="3">세대수</th> <th rowspan="2">비율(%)</th> </tr> <tr> <th>기정</th> <th>변경</th> <th>변경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4">전용 면적</td> <td>계</td> <td>45</td> <td>증) 13</td> <td>58</td> <td>100.0</td> </tr> <tr> <td>85㎡이하</td> <td>15</td> <td>증) 41</td> <td>56</td> <td>96.6</td> </tr> <tr> <td>85㎡~115㎡미만</td> <td>-</td> <td>-</td> <td>-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>115㎡초과</td> <td>30</td> <td>감) 28</td> <td>2</td> <td>3.4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주거비율 89.33%</p>									구 분	세대수			비율(%)	기정	변경	변경후	전용 면적	계	45	증) 13	58	100.0	85㎡이하	15	증) 41	56	96.6	85㎡~115㎡미만	-	-	-	-	115㎡초과	30	감) 28	2	3.4
구 분	세대수			비율(%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기정	변경	변경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용 면적	계	45	증) 13	58	100.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85㎡이하	15	증) 41	56	96.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85㎡~115㎡미만	-	-	-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15㎡초과	30	감) 28	2	3.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주1) 준주거지역은 주거비율을 건축연면적의 90%이하로 제한

주2) 용두1구역내 4획지 공개공지 183㎡이상 확보(서울시 건축조례 제26조 제3항 적용)

6) 공공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계획 : 변경

■ 공공시설 부담률(%) = $\{(555.8 - (250.4 + 0.0)) / (1,916.6 - (250.4 + 0.0))\} \times 100 = 18.3\%$

구분	촉진구역 계획기반시설(㎡)	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면적(㎡)	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 면적(㎡)	촉진구역 총면적(㎡)	공공시설 부담률(%)
기정	562.5	261.0	0.0	1,923.0	18.1
변경	555.8	250.4	0.0	1,916.6	18.3

7) 용적률 계획 : 변경없음

구분	산 정 내 용					
토지이용 계획(㎡)	계 (구역면적)	획지면적	공공시설 제공 면적(㎡)			비고
			계	공공시설 부담면적	계획공공용지내 기존공공용지	
	1,916.6	1,360.8	555.8	305.4	250.4	0.0
공공시설등 부지제공면적	<p>■ 순부담면적 = 공공시설 제공면적 - 계획공공용지내 기존공공용지 - 획지내 기존 공공용지 = 555.8㎡ - 250.4㎡ - 0.0㎡ = 305.4㎡ (18.3%)</p>					
기준/허용 용적률	400%		<p>■ 2030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상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에는 별도 허용용적률 적용 없음</p>			
상한용적률	<p><정비계획용적률(상한용적률)> ■ 정비계획용적률(상한용적률) = 허용용적률 × (1 + 1.3 × 가중치 × α) ▶ 준주거지역 상한용적률 = 400 × (1 + 1.3 × 1 × 0.22442) = 516.69% ∴ 상한용적률 515% 적용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- α $\frac{\text{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}}{\text{공공시설부지 제공후 대지면적}} = \frac{555.8 - 250.4 - 0.0}{1,916.6 - 555.8} = 0.22442$</p> <p>- 가중치 = 1</p> </div>					

8). 정비사업 시행계획 : 변경

구분	시행방법	시행예정시기	사업시행예정자	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	최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	비고
변경	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	구역지정(변경) 후 3년 이내	토지등소유자	58 (증 13)	해당없음	

9). 기타사항 변경 없음

7.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: 용두1구역 : 변경

가.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관한 결정

1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

구분	구역명	위치	면적(m ²)			구성비 (%)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용두1(4지구) 재정비촉진구역 (도시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)	용두동26-3일대	1,923.0	감) 6.4	1,916.6	100.0	지적측량성과에 따른 면적변경

나. 용도지역 및 시설에 관한 결정

1)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(선형변경 없음)

구분		면적(m ²)			비율 (%)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계		1,923.0	감) 6.4	1,916.6	100.0	지적측량성과에 따른 면적변경
주거지역	준주거지역	1,804.2	감) 3.2	1,801.0	93.9	
상업지역	일반상업지역	118.8	감) 3.2	115.6	6.1	

※ 변경사유 : 용두1재정비촉진구역 4지구 지적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

2) 기반시설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3)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: 변경

(1)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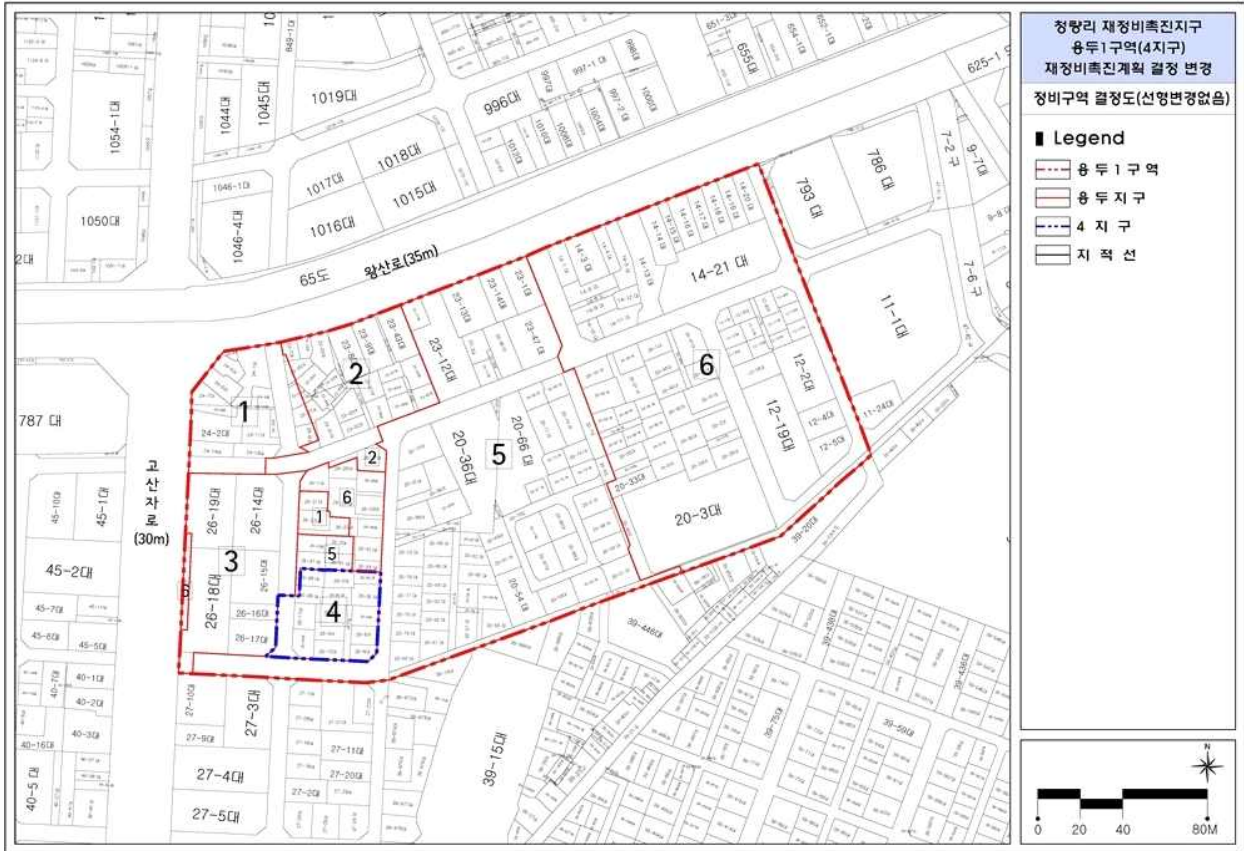
구분	면적(m ²)			비율 (%)	비고
	기정	변경	변경후		
획지 (용두1-4지구)	1,360.5	증) 0.3	1,360.8	100.0	지적측량성과에 따른 면적변경

다. 기타사항 변경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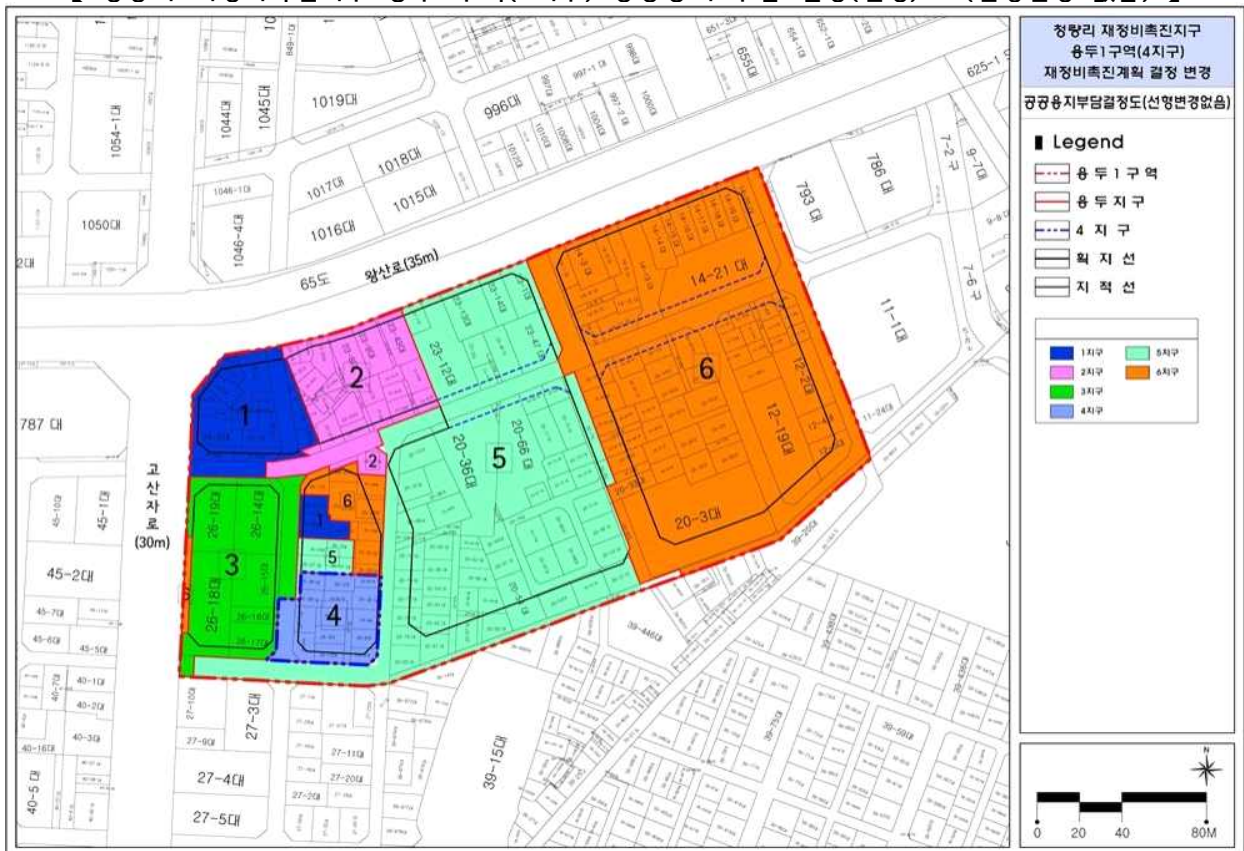
8.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은 「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」에 명시
9. 지형도면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와 동대문구 주거정비과에 비치한 도면과
같음
 - ※ 첨부된 도면 등(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)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.
10.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실 재정비촉진과(☎02-2133-7217) 및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(☎02-2127-4578)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.

<관련도면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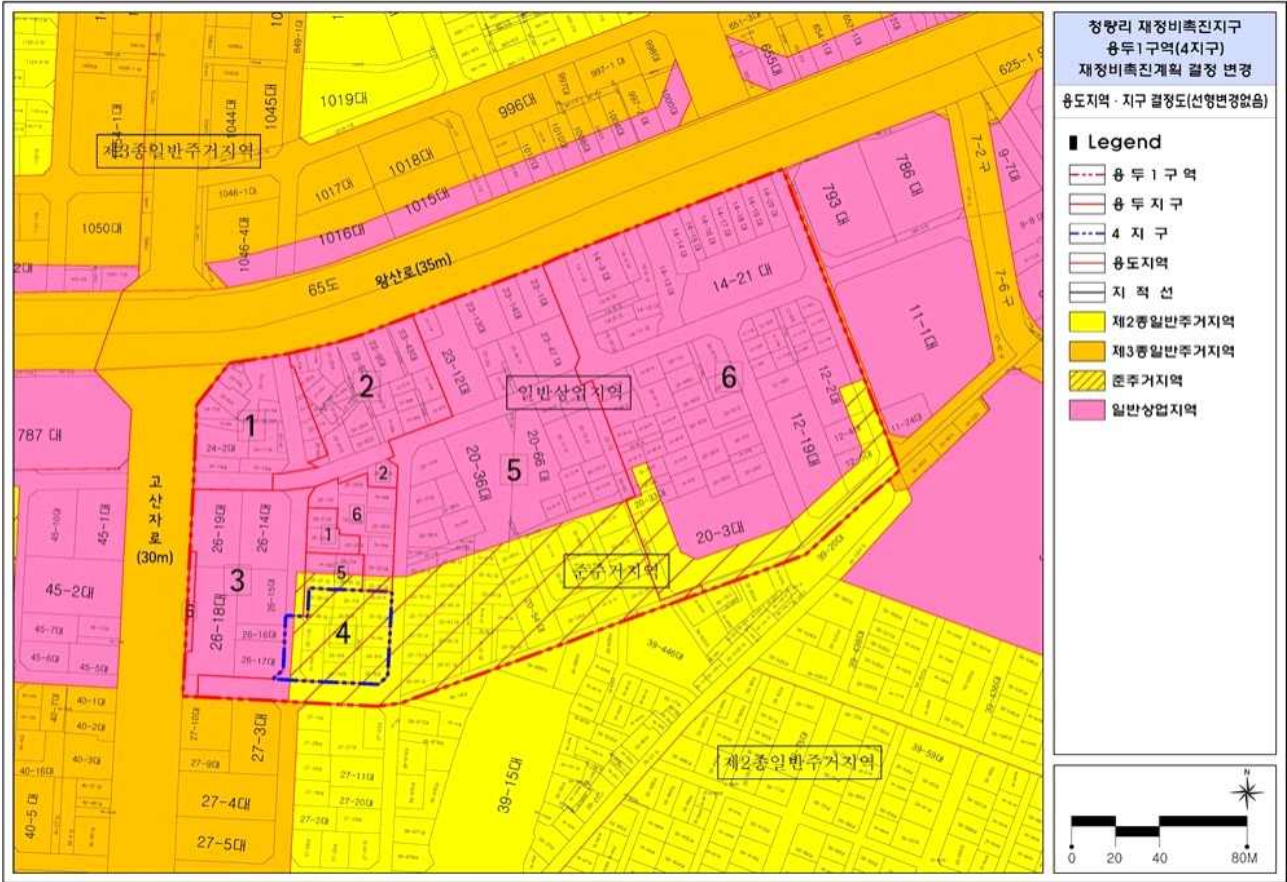
【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용두1구역(4지구) 정비구역 결정(변경)도 (선형변경 없음) 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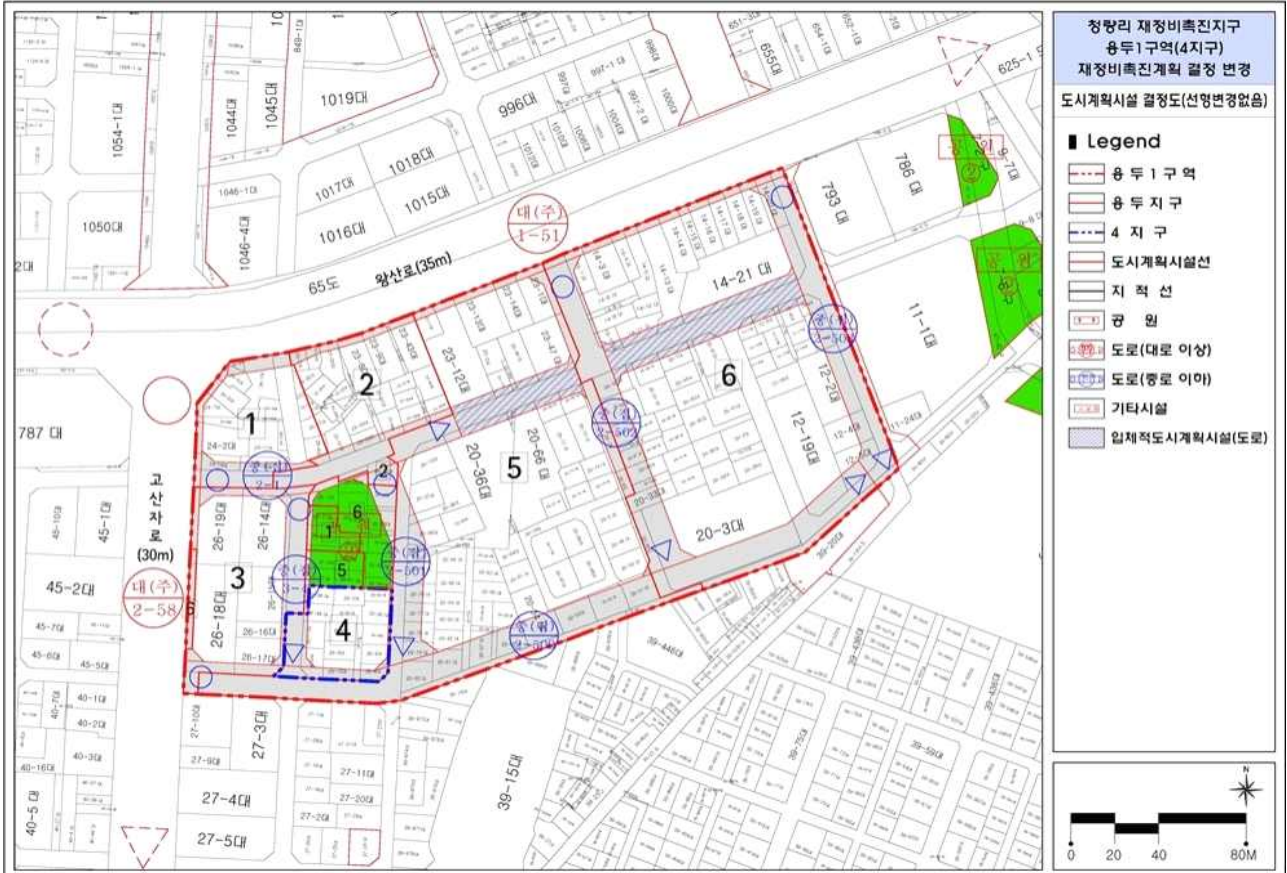
【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용두1구역(4지구) 공공용지 부담 결정(변경)도 (선형변경 없음) 】



【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용두1구역(4지구) 용도지역-지구 결정(변경)도 (선형변경 없음) 】



【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용두1구역(4지구)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도 (선형변경 없음) 】



【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용두1구역(4지구) 정비계획결정도 (선형변경 없음) 】

